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운송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생활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산단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철도여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명)과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5명, 8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택토지실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며, 택시산업 혁신성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교통본부에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회수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5명, 8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중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21명(8급 4명, 9급 17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8명(8급 4명, 9급 14명)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과 철도국 및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의 분장 사무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13호 중 “시범사업 활성화”를 “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0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7.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28.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같은 조 제15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 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 27.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지원·운용
 - 28. 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
 - 29.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

- 30. 자동차기술·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3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 32. 자동차 기술·안전 관련 정부·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

- 33.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4.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운영

같은 조 제16항 제1호 중 “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을 “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S/W 업데이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8.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7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1항제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을 “항공보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의 수립·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을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 제도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을 “항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항공안전 협의회 및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항공보안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국가항공보안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비상”을 “우발”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항경비”를 “항공기 내 보안 관리 및 공항 보호구역 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개정”을 “개정 등 항공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운영

19. 항공보안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같은 조 제17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8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항 내 지상조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5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20.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확산에 관한 총괄·조정

제27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관련 지도감독업무”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2호 중 “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을 “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16. 헬리콥터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17. 헬리콥터 분야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9.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 자가

용에 대한 운항·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20.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 규정 및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1. 헬리콥터 분야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4항 제6호 중 “비행”을 “비행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 중 “에 대한 지도·감독,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감독 및 안전성 확인”을 “ 및 정비업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관제통신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5항 제3호 중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공항 및 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항 및 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공항 및 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항 및 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공항 및 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한다.

제32호제2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제16호 중 “전문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조종사 및 관제사 양성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문교육기관(항공정비사과정 등)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항제1호 중 “ 및 항공무선표지소”를 “(토목, 건축, 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및 항공무선표지소 공사용품”을 “(토목, 건축, 기계)건설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및 항공무선표지소”를 “(토목, 건축, 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항개발사업”을 “공항개발사업(토목, 건축, 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이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검사

14. 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 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18.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및 항공무선표지소

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를 “(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비행장·공항(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12. 비행장·공항(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 건설자재의 조사·시험 및 검수
 13. 공항개발사업(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의 허가 및 지도·감독
 14.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
 15. 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 수립
- 제35조의2제3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조 제4항 제47호를 삭제한다.
-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관한 사항
-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를 “공항”으로 한다.
- 제59조제2항 중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 제61조제4항 전단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

제한다.

별표 1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명칭	관할 구역
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993”을 “999”로 하고, 일반직 계 “983”을 “98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을 “17”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4”를 “25”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를 “55”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9”를 “60”으로,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을 “8”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1”을 “52”로, 행정서기보 “3”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996”을 “1,002”로 하고, 일반직 계 “986”을 “99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을 “17”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4”를 “25”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4”를 “55”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2”를 “63”으로,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을 “8”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6”을 “47”로, 행정서기보 “3”을 “5”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0”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342”를 “1,357”로 하고, 일반직 계 “1,342”를 “1,357”로 하며, 시설주사 “146”을 “151”로, 시설주사보 “215”를 “221”로, 시설서기 “76”을 “79”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08”을 “112”로,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5”를 “6”으로, 기계운영서기 “30”을 “26”으로, 행정서기보 “37”을 “38”로, 시설서기보 “30”을 “32”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81”을 “193”으로, 토목운영서기보 “20”을 “18”로, 기계운영서기보 “71”을 “59”로,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1,342”를 “1,357”로 하고, 일반직 계 “1,342”를 “1,357”로 하며, 시설주사 “139”를 “144”로, 시설주사보 “210”을 “216”으로, 시설서기 “76”을 “79”로,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108”을 “112”로,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5”를 “6”으로, 기계운영서기 “30”을 “26”으로, 행정서기보 “37”을 “38”로, 시설서기보 “30”을 “32”로,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81”을 “193”으로, 토목운영서기보 “20”을 “18”로, 기계운영서기보 “71”을 “59”로,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503”을 “509”로 하고, 일반직 계 “503”을 “509”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61”을 “163”으로, 철도경찰서기 “195”를 “197”로, 철도경찰서기보 “61”을 “63”으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503”을 “509”로 하고, 일반직 계 “503”을 “509”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 “159”를 “161”로, 철도경찰서기 “195”를 “197”로, 철도경찰서기보 “61”을 “63”으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324”를 “338”로 하고, 일반직 계 “324”를 “3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3”을 “337”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에 1),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2023년 3월 31일까지
3)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19 제2호에 6), 7),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하안전관리 (지방국토관리청)	2명 (6급 1명, 7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방국토관리청)	13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철도경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6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1.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2. 제6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3.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2
4. 제61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5. 제61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6. 제61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7. 제61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1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제61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3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⑩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주택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 <u>시범사업</u> <u>활성화</u> -----	13. ----- <u>활성</u> <u>화</u> -----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삭 제>
⑫ ~ ⑭ (생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⑨ (생략)	제11조(교통물류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정 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신 설>	27.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 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 에 관한 사항
<신 설>	28.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육

⑪ ~ ⑭ (생략)

⑮ 자동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

13. ~ 2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 ⑭ (현행과 같음)

⑮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 24. (현행과 같음)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
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
운영

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

27.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지원·운영

28. 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의 제정 및 운영

29.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국
제조화 연구

30. 자동차기술·안전 국제조화
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
PEC/VSHG) 의장국 역할 수

<신 설>	<u>행 등에 관한 사항</u>	8.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확대 지원</u>	8. <u>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신 설>	31. <u>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 조화 기본계획 수립·시행</u>	9. <u>자동차·이륜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제정 및 운영</u>	<삭 제>
<신 설>	32. <u>자동차 기술·안전 관련 정부·업계 간 회의 및 각종 학회 등 대응</u>	10. <u>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국제 조화 연구</u>	<삭 제>
<신 설>	33. <u>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u>	11. <u>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u>	<삭 제>
<신 설>	34. <u>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운영</u>	12. <u>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 조화 기본계획 수립·시행</u>	<삭 제>
⑯ <u>첨단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⑯ -----	13. <u>자동차안전을 위한 정부·업계·학계 간 회의(ESV) 및 아시아 정부·업계 간 자동차 안전에 관한 회의(G/I Meeting) 대응</u>	<삭 제>
1. ----- <u>지원에 필요한 자동차관리 및 안전-----</u>	1. ----- <u>정책 수립 및 추진-----</u>	14. (생 략)	13. <u>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5. <u>새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u>	14. (현행과 같음)
5. <u>자율주행자동차-----</u>	5. <u>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S/W 업데이트-----</u>	16. <u>자동차 안전도평가(NCAP)</u>	<삭 제>
6. <u>개인형 이동수단 등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u>	6. <u>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5. <u>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u>
7. <u>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u>	7. <u>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u>		

<u>제도 운영</u>	
<u><신 설></u>	<u>1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⑰ 자동차운행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
1. ~ 37. (생략)	1. ~ 3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8. 자동차번호판 제도에 관한 사항</u>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⑩ (생략)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항공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u>항공안전 및 보안</u> -----	1. <u>항공보안</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u>	<u>3.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8. -----의 수립·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8. -----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 제도운영
9. <u>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u> -----	9. <u>항공</u> -----
10. <u>항공안전협의회 및 공항안전운영협의회</u> -----	10. <u>항공보안협의회</u> -----
11. <u>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u> -----	11. <u>국가항공보안계획</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 <u>비상</u> -----	13. ----- <u>우발</u> -----
14. <u>공항경비</u> -----	14. <u>항공기 내 보안 관리 및 공항보호구역 경비</u> -----
15. ----- <u>개정</u>	15. ----- <u>개정 등 항공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u>
16. · 17.(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운영</u>
<u><신 설></u>	<u>19. 항공보안 정보체계의 구축·운영</u>
⑫ ~ ⑮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⑰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⑰ -----

분장한다.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u>
	<u>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u>
	<u>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⑱ 공항안전환경과장은 다음 사	⑱ -----
항을 분장한다.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0. 공항 내 지상조업 안전관리에</u>
	<u>관한 사항</u>
<u><신 설></u>	<u>21.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물</u>
	<u>제한표면에 관한 사항</u>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제14조(철도국) ① ~ ④ (생 략)	제14조(철도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⑤ -----
분장한다.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18.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u>	<u><삭 제></u>
<u>및 개발의 총괄·조정</u>	
<u>19.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u>	<u><삭 제></u>
<u>확산에 관한 총괄·조정</u>	
20. · 21. (생 략)	20. · 21.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	⑩ -----
항을 분장한다.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9.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u>
	<u>및 개발의 총괄·조정</u>
<u><신 설></u>	<u>20.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u>
	<u>확산에 관한 총괄·조정</u>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④ -----
분장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3. 공항내 차량 및 장비의 안전관리</u>	<u><삭 제></u>
<u>4.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u>	<u>4. 공항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관</u>
	<u>련 지도감독 업무</u>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③ -----
분장한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	12. -----
----- 및 초경량비행장치	-----에 관한 사항
<u>신고수리에 관한 사항</u>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u>
	<u>수리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6. 헬리콥터 이륙·착륙 장소 외</u>

	에서의 이륙·착륙 및 최저비행 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7. 헬리콥터 분야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8.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 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 자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신 설>	19.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 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 자, 자가용에 대한 운항·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 시검사
<신 설>	20. 헬리콥터 분야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 및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1. 헬리콥터 분야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검사에 관한 사항
15. (생 략)	22.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비행----- -----	6. ---비행훈련----- -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19. 항공운송사업총대리점업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에 대한 지도 ·감독,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 ·감독 및 안전성 확인	3. ----- 및 정비업 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지 도·감독
4. 항공기의 신뢰성 관리 프로 그램에 대한 분석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국) ①·② (생 략)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③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관제통신국의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 <u>공항 및 항공 무선표지소</u> -----	3. ----- <u>공항</u>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 국) ①·② (생 략)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 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u>공항 및 무선표지소</u> - -----	1. ----- <u>공항</u>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 <u>공항 및 무선표지소</u> - -----	5. ----- <u>공항</u>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u>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u>공항 및 무선표지소</u> - -----	1. ----- <u>공항</u>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 <u>공항 및 무선표지소</u> - -----	4. ----- <u>공항</u> -----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u>공항 및 무선표지소</u> - -----	1. ----- <u>공항</u> ----- -----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② -----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u>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승인 등에 관한 사항</u>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② (생 략)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전문교육기관</u> ----- -----	16. <u>전문교육기관(조종사 및 관 제사 양성과정 등)</u> -----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15. (생략)

<신설>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② (생략)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및 항공무선표지소-----

2. ----- 및 항공무선표지소 공사용품-----

3. ----- 및 항공무선표지소-----

4. 비행장·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시설의 소음에 관한 사항

5. 공항개발사업-----

6.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

7.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8.·9. (생략)

<삭제>

15. (현행과 같음)

16. 전문교육기관(항공정비사과정 등)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토목, 건축, 기계)-----

2. ------(토목, 건축, 기계)건설자재-----

3. ------(토목, 건축, 기계)-----

4.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공항개발사업(토목, 건축, 기계)-----

<삭제>

<삭제>

8.·9. (현행과 같음)

10.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에 관한 업무

11. 사설비행장의 설치 허가

12. 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 수립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운영 기획·관리

2. (생략)

3. -----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기설비, 전자·통신시설 등의 -----

4. (생략)

5. 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부실측정 관련 업무

6. (생략)

<삭제>

<삭제>

<삭제>

13. 이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검사

14. 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 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점검

18.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

<삭제>

2. (현행과 같음)

3. ------(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의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7. 공항소방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삭 제>
8. 공항시설의 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비행장·공항(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의 신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행
<신 설>	12. 비행장·공항(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 건설자재의 조사·시험 및 검수
<신 설>	13. 공항개발사업(전기, 통신, 항행안전시설 등)의 허가 및 지도·감독
<신 설>	14.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
<신 설>	15. 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 수립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② (생 략)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삭 제>
<신 설>	19. 항공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19. (생 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6. (생 략)	1. ~ 46. (현행과 같음)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재생검사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항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공항 및 항공무선 표지소 -----	1. ----- 공항 -----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	12. ----- 공항 -----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② -----
-----	-----
-----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	-----
-----	-----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④ -----
-----	-----
----- 2022년 -----	----- 2024년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택시산업 혁신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삭제>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93	999	+6
·	·	·	
·	·	·	
일반직 계	983	989	+6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	17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4	25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4</u>	<u>55</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59</u>	<u>60</u>	+1
·	·	·	
·	·	·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7</u>	<u>8</u>	+1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51</u>	<u>52</u>	+1
·	·	·	
·	·	·	
행정서기보	<u>3</u>	<u>5</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0</u>	-2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96</u>	<u>1,002</u>	+6
·	·	·	
·	·	·	
일반직 계	<u>986</u>	<u>992</u>	+6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 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 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 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u>16</u>	<u>17</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 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	<u>24</u>	<u>25</u>	+1
·	·	·	
·	·	·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 무관·통계사무관·공 업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4</u>	<u>55</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 관	<u>62</u>	<u>63</u>	+1
·	·	·	
·	·	·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 ·통계주사·공업주사 ·환경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사서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 사	<u>7</u>	<u>8</u>	+1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46</u>	<u>47</u>	+1
·	·	·	
·	·	·	
행정서기보	<u>3</u>	<u>5</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0</u>	-2
•	•	•	
•	•	•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2</u>	<u>1,357</u>	+15
일반직 계	<u>1,342</u>	<u>1,357</u>	+15
•	•	•	
•	•	•	
시설주사	<u>146</u>	<u>151</u>	+5
•	•	•	
•	•	•	
시설주사보	<u>215</u>	<u>221</u>	+6
•	•	•	
•	•	•	
시설서기	<u>76</u>	<u>79</u>	+3
•	•	•	
•	•	•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108</u>	<u>112</u>	+4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 기	<u>5</u>	<u>6</u>	+1
기계운영서기	<u>30</u>	<u>26</u>	-4
행정서기보	<u>37</u>	<u>38</u>	+1
•	•	•	

시설서기보	<u>30</u>	<u>32</u>	+2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81</u>	<u>193</u>	+12
•	•	•	
토목운영서기보	<u>20</u>	<u>18</u>	-2
•	•	•	
기계운영서기보	<u>71</u>	<u>59</u>	-12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2</u>	<u>1,357</u>	+15
일반직 계	<u>1,342</u>	<u>1,357</u>	+15
•	•	•	
•	•	•	
시설주사	<u>139</u>	<u>144</u>	+5
•	•	•	
•	•	•	
시설주사보	<u>210</u>	<u>216</u>	+6
•	•	•	
•	•	•	
시설서기	<u>76</u>	<u>79</u>	+3
•	•	•	
•	•	•	
공업서기 또는 운전서기	<u>108</u>	<u>112</u>	+4
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 기	<u>5</u>	<u>6</u>	+1
기계운영서기	<u>30</u>	<u>26</u>	-4
행정서기보	<u>37</u>	<u>38</u>	+1
•	•	•	

시설서기보	<u>30</u>	<u>32</u>	+2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81</u>	<u>193</u>	+12
•	•	•	
토목운영서기보	<u>20</u>	<u>18</u>	-2
•	•	•	
기계운영서기보	<u>71</u>	<u>59</u>	-12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03</u>	<u>509</u>	+6
일반직 계	<u>503</u>	<u>509</u>	+6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61</u>	<u>163</u>	+2
•	•	•	
•	•	•	
철도경찰서기	<u>195</u>	<u>197</u>	+2
철도경찰서기보	<u>61</u>	<u>63</u>	+2
•	•	•	
•	•	•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03</u>	<u>509</u>	+6
일반직 계	<u>503</u>	<u>509</u>	+6
·	·	·	
·	·	·	
철도경찰주사보	<u>159</u>	<u>161</u>	+2
·	·	·	
·	·	·	
철도경찰서기	<u>195</u>	<u>197</u>	+2
철도경찰서기보	<u>61</u>	<u>63</u>	+2
·	·	·	
·	·	·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4</u>	<u>338</u>	+14
일반직 계	<u>324</u>	<u>338</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3</u>	<u>337</u>	+14